# 전북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간 단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(제2차실무교섭)

촉무과 50건(연번122~186)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1 | 122 | | | | | ③교육감은 소수직렬 퇴직예정자(공로연수, 명예퇴직 포함)가 있는 경우 미리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채용에 관한사항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2 | 124 | | | | | ⑤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일반 승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별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승진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일반 승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한다. |
| 3 | 125 | | | | | ⑥교육감은 소수직렬 업무분석을 통해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곳은 전보기간을 4년으로 개정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입법정책에 관한사항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4 | 126 | | | | | ⑦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(사무·전기·기계)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험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전직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5 | 133 | | | | | ⑭파견 및 휴직 등으로 전산직렬 결원 발생시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인원을 신규 채용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채용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6 | 135 | | | | | ⑯기존 10급제 폐지에 따른 구.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시 삭감된 공무원 1호봉 복원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| 7 | 136 | | | 제32조【계약직 공무원 운영】 |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 | 교육감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채용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채용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8 | 137 | | 제4절 보직관리 개선 | 제33조【보직관리 규정 개정】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전보)으로 비교섭사항 | 합의 | |
| 9 | 138 | | | | ②교육감은 인사업무를 담당한 보직자에 대하여는 현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노력한다. | ②교육감은 인사업무를 담당한 보직자에 대하여는 현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전보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인사업무를 담당한 보직자에 대하여는 현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보직하도록 노력한다. |
| 10 | 139 | | | | | ③ 교육감은 7급 이상 교육행정직렬공무원이 학교 외에 2년간 기관근무 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전보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11 | 140 | | | 제34조【보직관리 운영】 | 교육감은 정년퇴임을 1년 이하 남긴 지방공무원이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유보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 | 교육감은 정년퇴임을 1년 이하 남긴 지방공무원이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유보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전보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정년퇴임을 1년 이하 남긴 지방공무원이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유보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 |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12 | 141 | | | 제35조【가산점 및 포상 제도】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각 직종·직렬 간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. 전보인사에 적용하는 직종개편직렬 나이스상의 업무관련성 자격증 인정과 가점제도를 개선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승진, 전보)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13 | 142 | | | | | ②교육감은 직종·직렬별 전체 인원수에 대한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소수직렬의 포상을 확대 실시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➤기존협약(2016.6.15.) 제35조로 사측제시 |
| 14 | 143 | | | 제36조【필수 실무요원】 | ①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필수 실무요원을 임용한다. | ①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필수 실무요원을 임용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채용, 승진, 전보 등)으로 비교섭사항 | 합의 | |
| 15 | 144 | | | | ②교육감은 필수 실무요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. | ②교육감은 필수 실무요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(채용, 승진, 전보 등)으로 비교섭사항 | 합의 | |
| 16 | 145 | 제5장 위원회운영 혁신 | | 제37조【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】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반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|
| 17 | 146 | | | | ②교육장은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한다. | ②교육장은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위반 | 합의 | |
| 18 | 147 | | | | | ③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반 | 유보 | |
| 19 | 151 | 제6장 교육훈련 | | 제39조【연수지원】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. | | ○ | | ➤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을 활용하며,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| 합의 | ➤기존협약(2016.6.15.) 제39조 3항으로 합의 |
| 20 | 152 | | | |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다. |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. | | ○ | | ➤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을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. | 합의 | |
| 21 | 153 | | | | ③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 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 구성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. | ③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서 소수직렬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22 | 154 | | | |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노동 관련 연수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교육 위탁 및 실기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. |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각호와 같이 한다.<br>1.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.<br>2. 지방공무원이 재충전을 위한 자기개발연수를 신설한다.<br>3.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해당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| 유보 | |
| 23 | 155 | | | | ⑤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'기획력 향상과정'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. | ⑤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'기획력 향상과정' 등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이 2개 이상 개설하도록 한다. | | ○ | | ➤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·직렬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. | 유보 | ➤기존단협(2016.6.15.) 제39조 5항으로 사측제시 |
| 24 | 156 | | | | | ⑥경증 및 중증 장애인이 필요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개정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증 장애인 공무원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을 건의한다. |
| 25 | 157 | | | | | ⑦교육감은 사이버연수시간을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100%로 인정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| 유보 | ➤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사이버연수시간에 대한 상시학습 이수시간 인정 기준을 교원과 같이 차시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한다. |
| 26 | 158 | | | | | ⑧교육시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시설 실무과정의 증설 및 품의교육과정을 도입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➤기존단협(2016.6.15.) 제39조 5항으로 사측제시 |
| 27 | 159 | | | | | ⑨시설관리, 조리, 운전직렬 사무운영 기계운영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를 연 1회 실시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➤기존단협(2016.6.15.) 제41조 4호로 사측제시 |
| 28 | 160 | | | | | ⑩사이버연수 개설시 특정 직렬이 수강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➤기존단협(2016.6.15.) 제41조 5호로 사측제시 |
| 29 | 161 | | | | | ⑪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연수시간을 년 40시간으로 조정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| 30 | 162 | | | | | ⑫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 연구동호회, 각종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한다. | | | ○ | ➤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| 유보 | |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31 | 163 | | | | | ⑬교육감은 민간교육훈련기관 사전교육 신청제에 따라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➢기존단협(2016.6.15.) 제44조 4항으로 사측제시 |
| 32 | 164 | | | 제40조【교육계획 및 과정】 | ①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매년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. | ①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매년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33 | 165 | | | | ②교육감은 신규임용예정자 및 재직자에 대한 연수 시 노동·노사관계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다. | ②교육감은 신규임용예정자 및 재직자에 대한 연수 시 노동·노사관계 과목을 편성하도록 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34 | 166 | | | | ⑥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심의회 개최 시 노동조합의 의견이 필요한 과정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. | ③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심의회 개최 시 노동조합의 의견이 필요한 과정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➢기존단협(2016.6.15.) 제40조 6항으로 사측제시 |
| 35 | 167 | | | 제41조【기술직 직무교육】 | 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을 각호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.<br>1.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2.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3.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해당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<br>4. 시설관리, 조리, 운전직렬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5. 사이버연수 개설시 특정 직렬이 수강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. 6. 관리자과정 연수 및 기술직 대상 연수계획 수립 시 상호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. | 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을 각호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.<br>1.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2.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3.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해당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<br>4. 시설관리, 조리, 운전직렬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<br>5. 사이버연수 개설시 특정 직렬이 수강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.<br>6. 관리자과정 연수 및 기술직 대상 연수계획 수립 시 상호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36 | 168 | | | 제42조【신규임용 대상자 교육】 |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합격자는 임용 전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신규임용하여야 한다. |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합격자 임용 전에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강사로 강의할 수 있는 3시간을 확보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 | 유보 | |
| 37 | 169 | | | 제43조【국내외 연수 기회균등】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, 국외연수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, 국외연수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38 | 170 | | | | ②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직종,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며,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. | ②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직종,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며,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. | | ○ | | ➢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 국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직종,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정하도록 한다. | 합의 | |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39 | 171 | | | | ③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비로 국외 유학을 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. | ③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비로 국외유학을 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40 | 172 | | | | ④교육감은 국내외 연수 참가팀 선발과정에 심사위원을 다양화 하며 공개심사를 하도록 노력한다. | ④교육감은 국내외 연수 참가팀 선발과정에 심사위원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명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며 공개심사를 하도록 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➢사측의견제시<br>교육감은 국내외 연수 참가팀 선발과정에 심사위원을 다양화 하며 공개심사를 하도록 노력한다. |
| 41 | 173 | | | | ⑤교육감은 전북교육자치와 관련한 교육행정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한다. | ⑤교육감은 전북교육자치와 관련한 교육행정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42 | 174 | | | | ⑥국외연수 기준은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. | ⑥국외연수 기준은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. | ○ | | | ➢수용 | 합의 | |
| 43 | 176 | | | | ②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월 1회 2시간 이내로 조합원에 대한 자체연수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 | ②조합원 연수시간은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. | | ○ | | ➢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전 협의 시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. | 합의 | ➢사측의견으로 합의<br>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. |
| 44 | 177 | | | | ③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자율연수 활동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| ③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중 3일 이하는 1시간, 5일 이상은 2시간, 10개 이상의 연수과정에 적용한다. 배정된 노동교육 강의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로 우선 배정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➢기존단협(2016.6.15.) 제44조 1항으로 사측제시 |
| 45 | 178 | | | | ④교육감은 민간교육훈련기관 사전교육 신청제에 따라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따른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 | ④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<br>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| 유보 | |
| 46 | 179 | | | | | ⑤교육감은 조합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| 47 | 180 | | | | | ⑥교육감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| 48 | 181 | | | 제45조【전문성 향상지원】 | ①교육감은 본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및 행정 연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|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기계발비 350,000원을 지원하며, 자기계발비 사용범위를 체육활동까지 확대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| 49 | 182 | | | | ②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직장동호회, 학습동아리 참여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 | ②자기계발비 사용 시 적정 연수시간을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. | | | ○ | ➢수용불가(철회요구) | 유보 | |

| 순 | 연번 | 장 | 절 | 조 | 기존협약내용(2016.6.15.) | 단체교섭 요구안(2020.4.13.) | 검토결과 | | | 사용자 검토의견 |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수용 | 수정 수용 | 수용 불가 | | 결과 (합의,유보,철회) | 노사합의사항 |
| 50 | 186 | | | | ③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. | ③교육감은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장소에 CCTV 설치 등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. | | ○ | | ➤수정수용(내용수정)<br>교육감은 CCTV 등을 설치할 때 조합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 | 합의 | ➤교육감은 CCTV 등을 설치할 때 조합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 |

| 구분 | 안건 |
|---|---|
| 합의 | 16 |
| 유보 | 34 |
| 철회 | 0 |
| 계 | 50 |

**2020. 9. 9.**

**전라북도교육청 대표위원 박해정 (서명)** 박해정

**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강주용 (서명)** 강주용

**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김희권 (서명)** 김희권

**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김종덕 (서명)** 김종덕

**한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황태학 (서명)** 황태학